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상이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지닌 조선족 이주민들이 정치·사회·문화적인 주체로 인정을 받는 과정에 서울 지역의 조선족 민간단체¹⁾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조선족 민간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정착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조선족 민간단체의 노동시장,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적 차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란 제도적인 한계도 동시에 검토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활동 영역이 확장된 민간단체의 활동이 조선족 거주공동체로 국한된 점, 분산된 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연대의 분절 그리고 문화, 사회적 공존을 목표로 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현재 노동시장, 지역사회, 동포로서 참정권 확대 등을 개선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조선족 민간단체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민간단체들이 조선족 이주민의 정치적인 인정을 받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 주자의 공동체를 공간이라는 개념과 접목시킨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접촉은 이주자들의 활동가로서 의식을 성장시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주자들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²⁾ 두 번째로 조선족 민간단체들은 조선족 이주민이 한국에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2007년 3월부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고국 방문과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 때부터 각 조선족 관련 단체들이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출입국 관련 제도 안내 등을 통하여 동포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끝으로 조선족 민간단체는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자립

1) 민간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과는 달리 개인이나 민간의 임의단체의 자유의지에 의한 기부금이나 기여금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유지되거나 지원을 받는 조직체이다. 한국에는 국내지원에 의한 민간단체와 외원에 의한 민간단체 즉 외국 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산하기관이 있어 후생사업,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구호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원의 감소와 정부시책의 전환으로 점차 외원기관은 줄어들고 국내자원에 의한 활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0243&cid=42120&categoryId=42120>, 2015.12.11.)

2) 김영옥, 「인정투쟁 공간 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4권, 한국여성철학회, 2010, 32쪽.

및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인 인정을 받는 과정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밝히고자 한다.

하지만 이주민 공동체는 오히려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공동체가 제도 외 불합리성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통로가 되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대신, 제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늘이려 하기 때문이다.³⁾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사회에 등장한 두 지역에 조선족 민간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의 형성과 주요활동, 단체 성격 등의 분석을 통해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과정에 중국동포단체들의 활동과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1.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5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에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민간단체들이다. 한국 내 조선족 이주자 집단은 처음에 이주노동자로 입국했는데 이들은 다른 이주노동자와 달리 같은 한민족이라는 혈통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온 이주노동 자에 비하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 동포로 대우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과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 조선족 이주자보다는 이주자가 형성하는 집단을 통해 이주자가 한국에서 단체 활동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조선족 민간단체의 역사는 길지 않았다. 특히 자생적인 단체는 200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전무하였다.⁴⁾ 본 연구에서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귀한동포연합총회와 중국동포한마음협회, 그리고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한동포연합총회라는 민간단체를 중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세 민간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 중에서 회원 수, 행사 규모 및 영향력이 가장 큰 단체인 동시에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에도 적극적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사회·정치·문화 차원에서 조선족 결성한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문헌연구와 현지조사, 그리고 구술인터뷰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연구 논문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 관련 현황을 고찰하고, 한국 내 조선족 이주민의 유입 흐름과 민간단체의 형성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를 분석했다. 언론 보도와 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체험과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개별 조선족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주된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았던 과정과 조선족 민간단체 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정체성이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

3) 김홍진,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문화과학 52권, 문화과학사, 2007, 198쪽.

4) 연구원자료, 「재한 중국동포단체 현황과 과제」, 미드리 제4권, 이주동포정책 연구소, 2010, 75쪽.

선족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동 일대를 주요 연구 대상지로 설정 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단체 관련자, 조선족 현장 활동가와 단체 활동에 실제로 참가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현지조사 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 통해서 문헌에서 드러나지 않는 단체 활동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심층인터뷰는 총 6명의 조선족 이주자 단체 관계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조화된 질문지 이외에 포괄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을 끌어내는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상황과 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가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제2장 조선족 민간단체의 결성과 활동

2.1 조선족 이주민의 한국 유입과 민간단체의 결성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이 시기 조선족은 취업이나 또는 정착목적이 아닌 친지 방문의 명목으로 한국 정부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일시적인 모국 방문의 형태로 입국했고 주로 조선족 1세대나 2세대들이 중심이었다. 당시 한국 외무부를 주관부처로 '특정 국가 국민 방문 업무'의 하나로 조선족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였으며 간단한 여행증명서가 있으면 최대 3개월까지 체류허가를 부여하여 조선족의 한국 입국을 허가하였다.⁵⁾ 이처럼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과 한국 간의 큰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체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한국 내 불법체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90년 초청허가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법적 지위를 동포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규정 하여 사증을 발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친척의 초청대상도 '60세 이상, 친척 5촌 이내, 인척 4촌 이내'로 제한하는 입국정책을 추진하였다.⁶⁾ 이후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졌고 조선족들의 한국 이주와 체류가 본격화 되었다. 이 시기 조선족들은 중국 개혁·개방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위해 '잘사는 고국'을 찾아 떠났다.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이주민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체류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하의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3권을 비롯한 사회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만연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직장이탈, 임금체불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당시 조선족 이주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보호해 줄 기구가 없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단체를 조직할 만한 여력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족 이주민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5) 여수경, 「한국체류 조선족의 갈등과 적응」, 인문연구 제48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254쪽.

6) 구지영, 「이동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길항관계: 중국 조선족과 국적에 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26~27쪽.

초기에 입국한 조선족들은 지속적인 한국 체류가능 여부가 가장 큰 고민 이었다. 따라서 입국·체류·체류 연장·재입국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거주, 취업 그리고 법적 상담,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동반입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 단체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1994년 김해성 목사가 성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개소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조선족 노동자들이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으로 개명을 하였다.⁷⁾ 그리고 같은 해 '중국노동자협회'도 조직되었는데 당시 초대 회장으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추대되었다. 중국노동자협회는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중국 조선족과 중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재한 조선족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발족되기 시작했지만 이 조직들은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로 엄밀한 의미에서 재한 조선족 단체로 보기는 힘들다. 당시 재한 조선족들의 체류 자격이 타 국가 이주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동포라기보다는 이주노동자로 인식하여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와 연대가 중심적이었다. 그러다가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재한 조선족에게 '동포'라는 지위가 주어짐으로써 이들의 활동은 변화를 보이게 되었고 '재중동포'들이 제외되자 이들의 문제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분리되어 '민족담론·동포담론' 속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⁸⁾ 물론 이 시기에도 종교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제도를 통한 재한 중국 조선족의 합법화는 종교단체의 성격 을 지니지 않은 재한 중국 조선족단체의 출현 조건을 유발시켰으며, 기존 재한 조선족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시기에 설립한 단체의 목적은 동포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결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국내의 조선족 단체들이 교회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게 된 것은 2005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⁹⁾ 2004년 7월 1일부터는 중국 동포의 고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관리제 대상 동포에 대한 방문동거(F-1)사증발급 지침 및 중국동포 입국 절차>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서,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들은 F-1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법무부는 1992년 60세 이상이던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2004년에는 25세까지 낮추었고, 2004년 11월 11일부터는 동포로 입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폭 확대 하여 적용하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단기종합(C-3)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중국 동포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런 변화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인구수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중국 동포(조선족)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진귀국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대부분 조선족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불법체류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재중동포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독립하거나 자신들 중심의 권익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으로 결성된 단체 또한 급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도 중국

7) 이종구외, 『이주민의 에스니시티와 거주지역 분석』, 한국학술정보, 2011, 190쪽.

8) 이정은, 「재중동포 사회의 차이와 소통의 문화정치- 한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구성과 교류」, 민주주의와 인권 제11집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224쪽.

9) 이정은, 위의 논문(2011), 224쪽.

조선족의 권익 신장이나 기본적인 생활문제 해결에 활동의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기존 종교 단체 산하 모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재한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들과 동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최근 들어 재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봉사 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스스로가 자립 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를 결성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¹⁰⁾

제2절 조선족 민간단체의 현황과 활동

재한 조선족들은 이주 과정에서 겪은 차별과 차이의 인식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재한 조선족 내부적 관계 강화를 통한 단체를 형성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¹¹⁾

2000년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고 작은 조선족에 관련된 민간단체는 약 30 여개 있다.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한국의 이주 정책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까지 재한 조선족 스스로가 조직한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시행된 2000년 이후, 특히 2005년 <재외동포법> 개정 전후로 조선족들이 한국에 합법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동포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초기에 결성된 2000년에 성립된 조선족연합회는 조선족복지선교센터를 모태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조선족복지선교센터는 서울 홍제동 의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조선족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추진하면서 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조선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의견이 생기면서 교회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결국 일부 조선족들이 교회를 떠나 지금의 조선족연합회를 만들었다. 2001년부터 조선족연합회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총동원회, 외국인 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 강제추방 항의기도회 및 십자가 대행진,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집회 등 당시 조선족과 관련된 모든 현안에 개입했다.

그 이후 조선족연합회는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족의 자율적인 단체로 거듭나려고 했다. 2003년 한국에 유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조선족 학생들이 '재한 조선족 유학생네트워크(KCN)'를 조직하고 당시의 재한 중국 동포의 불법 체류 등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 단체는 한국 학교단체들과 협동하여 사회재능기부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정부에서도 인정을 받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조선족은 곧 불법체류자'란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당시 조선족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결성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재한 동포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클로버봉사단을 결성하여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식 고양에 힘쓰고 있다.¹²⁾ 두 번째로, 귀한 동포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10) 이춘호,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162쪽.

11) 박광성, 세계화 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한국학술정보, 2008, 284~287쪽.

12) 「조선족 유학생들, 주류사회 진출 노력 박차」, 《동북아신문》, 2010년 9월 14일.

강조하여 2006년에 발족한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조선족 이주자들이 스스로 회칙 및 임원을 선출 하고 2007년 2월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끝으로, 2009년 이후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면서 3년 이내 한국체류가 보장되고 활동범위도 확대되면서 민간단체 설립도 급속히 활발해졌다. 과거 종교단체와 연대한 투쟁에서 컴퓨터를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조선족을 돕거나,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 단체 활동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조선족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의 주요 운영진은 국적취득자가 아니지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한편 한국체류 중인 동포들을 위한 봉사 활동, 문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적취득자들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도 생겨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수용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¹³⁾

제3장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그 원인

3.1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차별

3.1.1 법적인 차별

타자화는 인식 대상들의 다른 점(차이)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부정적인 속성들과 연결시켜, 우등한 '우리'와 열등한 '그들(타자)'를 분리하는 과정으로써, 우리와 그들간의 권력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¹⁴⁾ 이런 타자화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차원의 '차별' 형태로 구체화된다. 우선 법적인 면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한국 사회 내 외국인을 3 단계로 구분하여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 순위 사회통합 대상자는 영주·국적 취득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등 영주자격·국적 신청자 및 영주·귀화한 결혼이민자 등 영주자격 취득자·귀화자, 특별귀화 또는 국적수반취득을 신청한 미성년자 및 귀화한 미성년자,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및 그 동반 가족,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이다. 제2순위 사회통합 대상자는 동포 중 구소련 동포 또는 무연고 중국 동포,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가족결합을 한 개인이다. 마지막으로 제3순위 사회통합 대상자는 단기순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다.¹⁵⁾ 이처럼 한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은 제2순위 대상자로, 이들은 비교적인 낮은 지위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조선족은 심리적으로는 한민족이고 중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이지만, 법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조선족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하려고 할 경우, 한국에 연고가 있는 조선족은 친척의 초청으로 입국할 수 있지만, 무연고일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에 의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13) 이춘호, 앞의 논문(2014), 691쪽.

14) 임의영·김태환,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1권 제1호, 2013, 241쪽.

15) 차용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자료 집, 2008년 11월호, 2008, 8쪽.

조선족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게 된 사람은 1992년 이다.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난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따라 조선족은 1992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중국 조선족과 구소련지역의 고려인들은 1999년에 실시된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즉 <재외동포법>에서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와 달리 국민의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동포 간에만 해도 차별적인 대우를 계속 받아 왔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내 국민과 거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¹⁶⁾ 그런데 <재외동포법>은 1999년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 (재외국민)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및 그 직계후손'(외국국적동포)으로 한정하였다. 민족을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정의하지 않고 '과거국적주의'에 의하여 정의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재중동포와 재구소련동포 및 일부 재일동포는 '재외동포'에서 배제됐다.⁶¹⁾ 이처럼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의한 것은 '중국 정부와의 외교 마찰'과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2011년 법무부는 국내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중국동포들이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⁷⁾ 그러나 이는 여전히 재미/재일동포 정책과 차별성을 지니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법> 및 <출입국 관리 법>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의 경우 사증을 발급할 때 한국에 머무는 기한과 관련해서 전혀 제한받지 않는데 비해, 중국동포들은 방문취업제의 적용을 받아 체류기한이 최장 5년이라는 제약이 있다. 한국에 재입국 하여 F-4 비자를 새로 취득한 자에게 장기거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했지만, 이러한 정부정책들은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인력수급제도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혹은 이른바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예외적으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비자를 바꾸지 못할 경우 중국동포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밖 없으며, 이는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와 엄연히 차별되는 현실인 것이다.¹⁷⁾

또한, 사회 복지 측면에서 현재 한국정부는 아동에게 보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도 보육·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들의 경우 동포라고 하지만 다문화정책에서 제외되어 보육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볼 때 조선족들은 비록 한국의 재외동포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와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시에 다문화정책에서도 배제되었다. 이들은 고국의 환대를 기대하고 한국에 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핀 법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설동훈,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제52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2, 201쪽.

17) 윤천우, 「재외동포법 적용 문제- 같은 법, 다른 취급」, 《중국동포신문》, 2013년 9월 11일자.

이런 법적 차별을 받는 상황 때문에 재한 조선족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의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1.2 의식적인 차별

조선족 이주민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의식적인 차원에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의식적인 차원의 차별은 이주자가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주된 이유에 해당하는데, 이주자를 마치 낯선 이방인이나 외계인처럼 응시하는 사회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했던 각국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국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역별 재외동포 호감도를 물어봤을 때 호감도가 높은 경우는 재미동포(55.0%), 재호주 및 뉴질랜드동포(53.7%), 재유럽동포(46.5%) 순으로 나타났고, 호감도가 낮은 지역은 재CIS동포(31.2%), 재중동포(28.2%), 재동남아동포(27.1%) 순으로 나타났다¹⁸⁾ '각 지역별 재외동포를 우리와 같은 한민족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재중동포가 49.5%로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중국동포와 민족동질성을 느끼는 것이 미주나 유럽 출신 동포보다 약한 것을 보여준다.⁷⁰⁾ 이 가운데 중국 조선족(재중동포)의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인데 이런 차별의 양상은 먼저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 조선족의 호칭은 중국 동포, 재한 동포, 한국계 중국인, 재중 동포, 조선족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중국 정부가 56개 민족 중 연변지역에 비롯된 중국 동북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용어는 중국어식 명칭에서 보편화된 '중국의 소수민족' 또는 '한국과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¹⁹⁾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이란 의미는 '가난한 중국노동자' 내지 '불법 체류하는 중국사람'이라는 일종의 낙인화된(stigmatized)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선족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 하나만 으로 '나/너', '우리/그들' 등 구별화의 대상이 되며 이 안에는 차별 또는 동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김명희는 한국인의 조선족이란 호칭사용이 한인계 소수민족을 일컫는 '공식적 이름'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구별 짓기'의 의미를 지니는 명칭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²⁰⁾ 이런 현실과 달리, 재한 조선족은 한국에서 자신들을 '동포' 또는 '한인계 소수민족' 등 민족적 사실과 결부되어 정의되기를 바란다. 20여 년간 한국에 체류하여 자영업을 종사하는 박미선씨도 이런 호칭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한다.

나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데 제일 반대다. 다들 한인이라고, 뭐 재미한인, 제일한인. 우리만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면 한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잖아요. 한국은 단일민족 나라인데 무슨 조선족.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재중동포 아니면 중국

18) 분석한 결과는 재미동포(57.4%), 재일동포(52.8%), 재호주 및 뉴질랜드동포재유럽동포(49.0%), 재중동포(49.5%), 재남미동포(42.3%), 재CIS동포(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3, 92쪽.)

19) 여수경, 앞의 논문(2005), 261쪽.

20) 김명희, 「한국내 조선족의 정체성과 한국관」, 계간사상, 제58집, 사회과학원, 2003, 183-201쪽.

동포라고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어 요. 그래야지요. 호칭도 똑같이 해야지.

(구술자 : 박미선, 40대)

호칭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입된 조선족이 많아지면서 조선족에 관한 범죄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차별 원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는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족은 '불법체류자', '살인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고, 조선족 밀집 거주 지역은 도시의 주변부, 소외되고 외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안정되고 중심적인 공간과 떨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구조에서 배제되는 주변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²¹⁾ 특히 2013년 오원춘 살인사건 발생한 후 인터넷에서 '조선족척살단', '짱개척살단' 등 조선족에게 적대적인 온라인 카페도 생겼다.

3.2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원인

3.2.1 문화적인 차이

유사한 외모와 언어, 문화 등은 조선족들에게 한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되거나 한국 생활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해 준다. 그러나 조선족들도 중국에서 태어나 몇 십 년간 살면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여러 차별이나 소외를 체험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문화적인 차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이다. 언어는 민족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언어는 개인이 경험하고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현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다.²²⁾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과 한국인 간에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어'²³⁾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안다는 것은 새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조선족들이 한국행을 결정하도록 하는 직접적 배경이다. 그러나 이북사투리, 억양, 영어 대신 중국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선족만 쓰는 한국어는 오히려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인과 같등이나 오해를 낳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1995년에 입국한 류경권씨는 한국에 온지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연변 사투리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다들 언어가 통하니까 한국에 와도 쉽게 취직할 수 있다고. 사실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표준어 써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거(조선어) 바로 표준어를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면 표준어 아니에요. 억양도 북한 억양이고 그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억양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고집 세요. 여자가 그나마 괜찮아... 빨리 배우니까. 남자는 고집 세요. 10년 넘어도 못 고쳐요. 계속 그대

21) 오경희, 「중국조선족」 이주 담론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삶과 정체성, 다문화사 회연구 제7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4, 46-47쪽 재인용.

22) 여수경, 앞의 논문(2005), 266쪽에서 재인용.

23)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와 조선어 두 호칭을 같이 쓰고 있는데 조선족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흔히 중국에서 조선어라고 부른다.

로 쓴다니까.

한국에 치마 있잖아요. 우리는 초매요. 초매. 그래서 당연히 못 알아들어. 중국말도 같이 쓰고, 뭐 '집에 凳子(의자) 있냐?' 이래 한국어와 중국어 섞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컴퓨터도 몰라요. 중국에서 계산기(计算机)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구술자 : 류경권, 50대)

두 번째로, 문화의식(cultural awareness)의 차이도 조선족 사람들이 한 국에서 차별을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조선족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유입될 시점은 1990년대 초였다. 당시 중국의 경제 수준이 낮았고 사람들의 문화의식도 높지 않았다. 법의식과 환경보호의식 등이 희박한 조선족 사람들은 당시 문명화된 한국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 대림동 에서 사업을 하는 이○○씨는 1995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연변자치주 농촌 출신인 이○○씨는 조선족 대부분이 농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문명되지 않았다고'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

여기 온 사람들이 보면은 다 중국에서 도시에서 살지 않고 농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내 있는 사람들이 시내 안정적인 직장 있으니까 한국에 동포로 오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만 농촌에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촌 생활하는 분이 한국에 오니까 도시 생활 을 좀 적응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여자가 지나보니까 앞에서 그냥 횡단보도를 막 뛰어가더라고. 그리고 그런 어이없는 거 있잖아요. 무단 횡단, 길에서 담배를 버리고 쓰레기를 검은(검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길에 가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동포가 무식하고 낮다고 생각하는 거 예요.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문명한 사람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문명하다는 거 아니라 기본 상식 을 지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술자 : 이가운, 40대)

3.2.2 노동시장 내 낮은 지위와 사회적 편견

처음에 경제력 차이로 국경을 넘은 조선족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하층민'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한민족 혈 통,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서 보여준 조선민족의 혁명적 활동과 같은 자긍심 을 지닌 재중동포들(조선족)이 한국사회에 이입되는 순간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편입된다.²⁴⁾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의 흐름을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무역회사, 여행사 등에 취직하거나 중국식당, 중국 식료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수는 건설업이나 식당의 단순서비스업과 같은 하층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조선족들이 건설 현장이나 식당 같은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재한 조선족 근무업종 및 남녀비율²⁵⁾

24) 임선일 지음,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어울누리, 2011, 162쪽.

25) 이 자료는 2008년 7~8월 사이 법무부와 노동부 공동으로 지원한 '방문취업제용 역'의 일환으로 수

업종	남성	여성	업종	남성	여성
제조업(공장)	23.7%	4.5%	건설업	54.4%	1.2%
음식점업	7.4%	48.1%	여관(수박)업	0.6%	5.1%
학원·교육기관	0.0%	2.5%	가사도우미	0.0%	20.7%
병원·간병	0.8%	9.0%	전문직	0.2%	1.0%
기타	12.9%	8.0%	전체	502(100.0%)	489(100.0%)

1989년 처음에 한국에 와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흑룡강성 출신인 박○○씨도 "짐승", "후진국" 들이라며 자신들을 호명하는 한국사회의 시선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못 사는데 살다가 여기 와서"라며 마치 '은혜' 를 베푸는 듯한 인상도 그녀가 기억해 있다.

구술자 :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에 (차별적: 인종차별) 시선 받는 것이 없으세요?

박미선 : 많았지.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람 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쳐다보면 우리 그냥 짐승같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경쟁 을 많이 해서 그들의 편견.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서 그니까 외국인으로, 후진국에서 온다고 그런 생각이요. (중략) 그 때 우리 회사는 직원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연수생 할 때 연애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남자가 집도 없이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다 이해 안 되잖아. 어떻게 집도 없이 결혼하자 그래. 그래서 '니들 좋지. 못 사는데 살다가 여기 와서 일도 하고 남자도 만나고 좋지 뭐.' 그랬어요.

(구술자 : 박미선, 40대)

3.2.3 언론 보도를 통한 부정적 담론의 확대

앞서 일상에서 언어와 편견으로 인한 조선족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고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의 미디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²⁶⁾ 미디어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인종, 종족 및 문화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주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재한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짱개', '짜퉁', '중국놈'과 같은 비하적 단어와 함께, 적지 않은 언론은 지속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에서 중국 조선족이 관련 있을 경우 범죄사실 그 자체보다는 중국 조선족 전체를 부정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한 사회에서 외국인을 타자화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과 관련해서 범죄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을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없고 의무

집된 설문조사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크게 두 곳에서 수집 되었는데 한 곳은 서울 목동 출입국 사무소이고 다른 한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1개 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이진영·박우,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2009, 111쪽.)

26) 이희은, 「미디어에 나타난 색의 재현과 문화 정체성」, 탈경계 인문학 제2권 제3호(제4집), 2009, 35~66쪽.

가 지키지 않은 집단으로 부각시킨다.

이와 같이 범죄보도와 관련된 개인을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진 '타자'로 규정하고 '우리'의 안정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위험한 집단'으로 표상한다. 조선족의 매춘이나 강도, 사기, 폭력과 같은 범죄는 사회 안전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이런 조선족 범죄에 대한 기사화는 '타자화'를 강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의 요람이었던 서울 구로공단 주변 가산동 가리봉동 대림2 동 일대가 범죄로 가득찬 '조선족 타운'으로 변하고 있다. 관광비자나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중국출신 5만여 명이 몰려들어 강도, 폭력, 사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서울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5천여 건의 범죄 중 3천여 건이 이 지역 거주 '조선족'들이 저지른 범죄였으며 전체의 70%가 강력범죄였다. 신고 되지 않은 사소한 범죄까지 합치면 이 숫자의 배 이상 될 것 이라는 게 경찰서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들이 쉽게 범죄 빠지는 것은 IMF사태 이후 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중국내 불법송출 조직에 5백만~1천만 원씩의 빚을 진 채 국내에 들어왔으나 합법적으로 돈 벌 기회는 자꾸 줄어들어 빚 청산을 위해 범죄행각을 벌인다는 것이다. 범행 후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잡힐 염려도 별로 없고 붙잡힌 다 해도 초범으로 분류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을 받고 강제 출국되면 그만이라 '큰 것 한탕하고 돌아가겠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서울도심 무법지대 '조선족 타운' 」) 27)

앞의 인용문에서 "범죄로 가득한 조선족 타운", "강력범죄" 등으로 '조선족=예비범죄자'로 호명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한국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사건이 언론화된 이후, 조선족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계심이 사회전체에 증대되는 동시에 조선족에 대한 항공사 나 국제전화업체 등의 후원도 감소되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족척살단', '짱 개척살단' 등 조선족에게 적대적인 온라인 카페도 만들어졌으며 수원사건 피 의자와 조선족을 동일시하는 시선이 한국에서 강화되었다.²⁸⁾ 2013년 4월 17 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한동포연합총회 등에 따르면 오원춘 사건 발생 이전 불법체류자 체포 전화사 하루 평균 15~20건 정도였지만, 오원춘 사건 이후 체포 전화가 하루 30~40건으로 50%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왜 단속 빨리 안하느냐"는 불법체류 신고자의 항의전화도 폭주하는 등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²⁹⁾

이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사회 주류 언론도 조선족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 원으로 간주하고, 수평적 관계에 기반을 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조(一助)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국사회 에 확산시키고 있다.³⁰⁾

제4장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조선족 민간단체의 활동과 한계

27) 국민일보, 1999년 7월 7일자.

28) 「봉변당하라' 나들이 겁내는 조선족 동포」, 《동아일보》, 2012년 4월 18일자.

29) 「너도 오원춘 같은 놈이야?」 조선족 수난시대」, 《흑룡강신문》, 2012년 4월 18일자.

30) 서정경, 앞의 논문(2014), 81쪽.

낸시 프레이저는 '지구화시대의 정의(justice)'의 당사자가 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인가, 지구의 인류인가, 아니면 초국적 위험공동체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정의의 새로운 틀이 경제적 분배(redistribution), 문화적 인정(recognition), 그리고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 3 가지 차원을 포 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이런 관점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에 게 시선을 옮겨보면, <재외동포법> 개정을 전후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결집체를 조직하고 그들 내에서 소통을 시도하며 한국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적·집단적인 노력들은 결국 차이의 사회적 인정, 정치 참여, 문화적 인정의 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재한 조선족 단체의 활동도 이런 맥락을 따라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조선족 민간단체들은 서로 내부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의 유의미한 주체가 되기 위한 역량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족 이주민의 권익보호, 역량 강화, 지역통합 등 여러 측면에서 조선족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1999년 재 외동포법이 실시된 후 조선족 단체들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노동 시장에서 중국동포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7년까지 합법체류, 노동보호, 부분적인 자유왕래 등 사회적인 권리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전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나 대표적인 매체가 없기 때문에 조선족 민간단체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밀집거주 지역 내부로 영향력이 국한 되어 있고 주류 언론 매체의 주목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보면, 조선족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서 조선족의 정치적인 참여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참정권과 유권자로서 권리에 관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치 참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조선족들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한 통 로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룬 가리봉과 대림동 등 지역에서 중국동포 유 권자들이 지역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끝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족들은 언어와 외모 등에서 한국 사 람과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문화 적인 차이도 있다.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한 의식, 문화적 차별과 위 계화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차이를 인정받고 조선족 문화생산의 주체로서 조선족 이주민과 민간단체들은 여러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와 교류 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문화를 알리고 이런 문화적 차이가 한국 사 회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1절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들의 활동

4.1.1 사회적 인정: 지역, 자립 혹은 통합

1990년대 재한 조선족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 하였다. 당시 재한 조선족들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 전체의 인권과 노동권 등 보편적 권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였다. 단체 활동을 통해 재한 조선족 동포들은 자신들을 이주노동자로 인식하였으며, 비록 정치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지만 각종 집단행동과 저항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31) 이정은, 앞의 논문(2011), 243쪽에서 재인용.

먼저 1999년 12월부터 실시된 재외동포법과 그 시행령의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에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하여 재한 조선족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시 약 30만 명에 이르는 재한 조선족은 가족동반 이주가 불가능했고, 고액의 비용을 들여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돈을 모을 때까지는 쉽게 돌아가지 못하여 가족의 장기 이산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라는 슬로건으로 이동과 거주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해갔다.

하지만, 출입국관리 시행령으로 정부가 변함없이 이동과 취로를 규제하자, 조선족과 지원 사회단체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조선족의 인권침해의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여기에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라는 슬로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즉 국적회복과 같은 동포애적 차원과 이동의 자유 보장과 비슷한 인권적 차원 등,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목표들이 혼재되어 있었다.³²⁾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1999년 발효된 재외동포법의 부당성에 대한 개선 요구 운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재외동포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안정적 체류와 자유 취업 등 시민적 권리의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한 조선족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한국 사회 하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더불어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 문경철은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조선족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쪽에 동포들이 뭐가 힘든지 계속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관, 업체를 찾아가서 도움이 요청을 하는 거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직업이죠. 먹고 살기 위해 왔으니까. 일자리 찾는 거만 아니고 그 岗位 (일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일 하다가 문제를 생겨가지고 해결해야 되잖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생기면, 해결할 줄도 몰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몰라. 노동부에 찾아가도 될 거 있고 안 될 거도 있고. 그럼 법을 하라. 그럼 소송하고. 아무도, 옛날에 아는 거 없다. 지금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 쪽에 뭐든지 다 해결이 돼. 뭐 일하다가 돈 못 받는 거. 어느 행정 부문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돈 받고, 어떤 거 받을 수 있다. 어떤 거는 안 된다. 못 받아. 아프다면, 일하다가 다치는 데 의료보험 안 된다고, 그럼 어떤 병 원가 면은 우리는 얘기했으니까 30% 할인이 된다. 뭐 치과, 우리 다 있어요.

(구술자 : 문경철, 40대)

문경철의 구술처럼 단체의 역할은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밑에 조직된 한마음 봉사단은 주로 지역 사회의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계속 해 왔다. 한편 이 단체는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지역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경찰과의 순찰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조선족 동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거나 한국인으로부터의 부정적 시선들로 사회적 입지가 축소되

32) 구지영, 앞의 논문(2011), 28쪽.

는 것을 막고 동포이자 지역공동체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체로 조선족을 위치 지우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화합과 공존의 중국동포타운을 안정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자"는 재한 조선족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합되어 경찰의 선전활동에 동원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 내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쇠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앞에 소개 한 문경철과 같은 한 마음협회 회원인 박미선(자영업)은 '지역'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 행사를 할 때마다 애들이 지역과 함께 하는데요. 체육대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7회째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에 축구팀도 들어오고, 배구팀도 들어오고, 다 있어요. 지역에 경찰소도 경찰소에서 팀도 만들어 오고. 그런 거를 많이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커뮤니티가 결성한 이웃 자체도 그랬었어요. (중략) 먹고 자고 일만 했으니까 주말이 되거나 공휴일 되면은 할 거리가 없어요. 성인들 특히. 술 먹고 뭐 놀음 하고 이런 거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처에서 같이 축구, 배구, 산에 다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platform은 꼭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야 안 됐습니까. 친구 친구, 동네. 이래가지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우리 한마음협회의 존재를 많이 알게 되고 행사 있을 때도 우리 부르거든요.

(구술자: 문경철, 40대)

이런 활동들을 인하여 단체들의 역할이 지금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데.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만 커뮤니티 활동했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우리가 영등포 읍입니다. 영등포을 국회의원 신경민도 왔습니다. 이번에 주중 한국대사 권영세, 그분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새누리당 당원 박성균, 그 분도 왔어요. 관심 없으면 안 오거든요. 우리 대사관에 총영사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도 왔거든요. 즐겁게 다 같이 놀고 팀(축구팀, 배구팀 등)도 다 만들고.

(구술자: 박○○, 40대)

두 번째로, 조선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활동은 조선 족연합회가 2006년에 만든 신용호조부(信用互助部)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기 반을 가지게 된 회원들의 기금을 바탕으로 자체 금융조합을 설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재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2010년까지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었다.³³⁾ 조선족연합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조선족 민간단체도 이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영업을 종사하는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원이 이○○는 조선족의 대출, 담보 등에서 어려움을 다음 과 같이 말했다.

33) 대출 금리는 월 2%이고 기금조성을 위해 돈을 낸 이들에게 1.5% 이자를 지급 하고 0.5%는 신용호조부에서 수수료로 가져간다.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인 2명 이 필요한데, 보증인은 신용호조부 기금에 돈을 내놓은 사람이어야 한다. (「조선 족의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 '신용호조」, 《연합뉴스》, 2011년 1월 3일자.)

스스로 은행 찾아가서 대출하려면 은행이 안 해줘요.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이나. 그거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단체도 은행가서, 우리 하나는 행이랑 잘 알잖아, 활동을 많이 하니깐, 그래서 가서 담보 같은 거도 해주지. 店(장사하는 장소)도 찾아주고요.

(구술자 : 이○○, 40대)

세 번째로, 최근에 들어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활동은 2015년 서울시 후 원으로 재한동포연합총회가 주최하는 '사회 통합을 위한 중국동포 시민 아카데미'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시민 아카데미는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국적을 회복했거나 취득한 재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함양, 사회의식 고 양, 권리와 역할과 의무 학습, 한국사회와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교류와 소통 및 공감 확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예방 및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 려고 한다. 이처럼 현재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동포이자 지역 공동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자신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이미지 개 선과 경제적·교육적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4.1.2 정치적 인정 : 동포/국적과 참정권

이주민은 비시민이기에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좌우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의해서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³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정은 이들을 '자율적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관점에 보면 이주민을 통합하는데 정치적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의 참정권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참정권은 크게 한국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가 여부에서부터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선거권을 둘러싼 논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를 거론한 이후 정 치권이 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보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9년 9월에 한국 정부는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2000년 11월 의원입법형식으로 20세 이상 장기거주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종적으로 2005년 6월 공식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한국 내 시민단체 및 재한 조선족들의 반대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1999년 8월 23일 조선족 조연섭, 문현순, 전미라 3인이 재외동포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 했다는 이유로 한국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했다. 8월 27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조선족들은 '한국이 싫어서 잘사는 미국으로 간 재미교

34) 정정훈,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이주노동자운동, 혹은 국가를 가로지르는 정치 적 권리 투쟁」, 진보평론, 제49호, 2011, 43쪽.

35) 이춘호, 「한국 거주 외국인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이주자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4(c), 125~126쪽.

포만 동포고 독립운동 하러 만주나 연해 주로 간 사람들이 후손은 동포로 되지 못했다'고 분개했다.⁹⁵⁾ 결과적으로 2004년 3월 5일에 시행된 재외동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안에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시킴으로 써 조선인과 고려인도 한정적이거나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³⁶⁾ 이에 재한 조선족들의 정치참여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국적취득자 14만, 영주권자를 포함하면 24만 명에 달한다. 그 시점부터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재한동포연합총회의 회장인 김숙자는 조선족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유권자로서 정치권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단체는 회원이 모이니까 사람 많아지니까 힘이 커지는 거야. 힘 커지니까 정치에서 중요시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이제 동포들 중에서 유권자 많잖아. 이제 한국에서 나처럼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 회복 하는 사람이 14만 명이다. 그 다음에 영주권 가진 사람을 포함하면 24 만 명이고 이제 국가 쪽에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에서 우리를 중요시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약을 했어, 단체에서 70만 동포 이제 이런 요구가 있다. 우리도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한국 국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라. 이런 게 우리 단체에서 자주 공약해서 그래서 정치인들은 주목하는 거지. 국회 가서 토론을 하고 법을 거쳐줄게 이래. 그래서 하다 하니까 우리 단체 그런 힘을 쓰고 있는 거야. 反映(제언)을 하면서 다 우리 단체에서 힘들게 부여해서 이런 저런 거 다 해결되는 거야. 거절되는 거 아니야.

(구술자 : 김숙자, 50대)

이처럼 민간단체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조선족 이주민들이 직접 정치활동을 참여하는데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에 제일 대표적인 활동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교사인 문○○의 말에 따르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동포 유권자운동을 확산시키고 조직화하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 동포들의 조직화된 의지를 표출하여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일단 중요성을 알려 줘야 돼요. 우리 단체 회원이 거의 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데. 이런 거(정치참여: 인용자 주)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관한 교육 프로그램 계속 하더라고요. 2014년도 그렇고, 2010년도. 투표를 안 한다면 우리 중국동포들이 이제 어떤 요구가 있는지 누가 알아야. 우리 권익은 우리 스스로 나와서 지켜야 되잖아요.

(구술자 :문○○, 40대)

그 후 2006년 12월 17일에 서울중국인교회(대표목사 최황규)에서는 국내 유권자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계 결혼이민여성 유권자운동'을 출범시켰으며 지속적인 유권자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때 까지만 해도 운동의 주도자는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아니고 '한국 교회'였다. 하지만 2010년 5월에 한국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3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11.29.] 결정요지4항에서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귀한동포연합총회 유권자운동'과 '중국 결혼이민자 유권자운동본부'가 연대하여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지역에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참석한 400명의 중국계 동포들은 '우리도 유권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국내 중국계 동포(조선족)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귀한동포연합총회, 중국결혼이민자 유권자운동본부 이외에도 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등 단체에서도 동포들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양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최근 1~2년 사이에 국적취득을 하여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회원들에게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 '유권자 연대선언'을 보면, 조선족이 주도가 되어 참정권 획득을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정계는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대한 무관심 상태였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도 자유선진당에서만 조선족 동포들이 밀집한 서울 시 영등포, 구로, 금천구에 구의원 비례대표 1순위로 중국동포 3명을 추천했을 뿐, 다른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이주민 자신도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모습 보이고 있다.

4.1.3 문화적 인정: 차이의 인정과 문화 생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수자의 요구와 주류 집단의 주장이 서로 논쟁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거쳐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계는 확장되어야 하며, 더욱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³⁷⁾ 한국 사회 내 이주민들은 문화 축제나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문화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평상시에 이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 주요 명절마다 펼쳐지는 '대규모 문화행사'이다. 단체들은 이를 통해 조선족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고자 하고 있다.

하나는 2007년도에 중국에서 3.8 부녀절(妇女节)이 있고 엄청 잘 됐잖아. 근데 한국에서 3.8 부녀절이 없어. 있기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끝이야.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없어. 그 때 3.8절 우리 회원 이 2000명을 모이고 3.8절 됐어. 이제 큰 상을 해가지고 演出(공연: 인용자주)도 하고 그리고 선진상(先进奖-우수상: 인용자주), 며느리 선진 뽑고, 그리고 시부모.. 노인 중에서도 선진을 뽑고. 경로단에서 선진, 일을 하는 홍기수(红旗手³⁸⁾)등 뽑아가지고 선물도 주고하며 감동을 받았어. 그러더니 한국 사람도 그거 뭐지 하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이런 저런 게 있다. 그래더니 나는 이거를 해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서 그러지만 해 달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3.8절마다 행사를 하는 거야.

(구술자 : 김숙자, 50대)

이런 문화행사는 재한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회의 교류를 이루고 지역 내에서 조선족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일상 문화 활동의 하나

37) 이춘호, 앞의 논문(2014b), 172쪽에서 재인용.

38) 중국에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나 이바지를 한 여성들에게 주는 상이다.

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사회 구성원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공통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형성되며, 그들에 대한 인정을 통해 정체성 역시 형성된다. 조선족 이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러 차원의 조선족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잡고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족 민간단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화적인 차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족 민간단체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출신 동포들과 조선족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자립적인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국 주류 문화를 수용만 하는 단계를 넘어 문화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조선족이라는 문화적인 주체가 되고자 한다.

4.2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 활동의 한계

4.2.1 제도적인 한계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정부는 재중동포(조선족)에 관한 정책을 만들 때 기본적인 시각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관리하는 대상이란 점이다. 그래서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조선족을 '재외동포'에서 배제하고 지속적인 불공평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일한 조선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2005년 재외동포법 개정된 이후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동포의 신분을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지 여러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제한은 조선족을 관련 취업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취업관리제도는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취업 우대 정책의 하나로 건설업, 음식점, 간병인, 청소업, 자동차수리업(2005.4.1부로 추가된 업종) 등 내국인 기피가 심한 서비스 분야에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 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 1월 10일부터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대상자의 취업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 하였다.³⁹⁾ 한국정부는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외국 인력의 도입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담당하여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업, 농업, 어업 등 20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⁴⁰⁾ 2007년부터 도입한 방문취업제도 취업범위를 더 확대되었지만 취업 가능 업종은 총 3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런 취업범위의 한정은 조선족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지닌 국적취득자 혹은 동포로 인정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39)출입국관리국(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2/1179342_20855.jsp, 2016.1.9.)

40)출입국관리국(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3/1175317_20856.jsp, 2016.1.9.)

조선족들이 비록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취업을 허가한 후에 제조업에만 한정되었던 취업활동 영역을 서비스업, 농축산업도 포함하여 현재 방문취업제를 의하여 34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 하지만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에만 허가하고 있다. 특히 그 외의 업종에서 취업할 경우는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2번 이상 적 발될 경우 강제추방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방문취업제도는 전문분야에서 조선족들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3D 업종에만 취업이 한정되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하층민', '가난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2008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절차를 간소화되면서 조선족 이주민들이 더 쉽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범위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전문 직종에 한정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보다 낮은 조선족 이주민들의 경우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더불어 단순노무를 한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생기지 못하고 국내에서 사회진입을 포기하며 계절노동만 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부는 조선족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蚕食)하는 주범으로 여기고 전문직으로 취직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단순노무를 하면서 일하기 바쁜 조선족 이주민들은 동포단체 활동을 참여하는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조 선족은 한국 정부의 제도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아닌 '제3의 범주'로 취급받고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조선족은 법적으로는 동포이자 같은 민족으로 인정되었지만, 노동시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별은 오직 한국정부의 이해만으로 제한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상의 불평등 아래에서 조 선족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선족들은 동포이지만 그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의제적인 동포'로 위치 지워져 있다.

4.2.2 조선족 민간단체들의 문제점

조선족들의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조선족 민간단체들의 활동 전략의 한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지역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대림.가리봉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하고 있지만 가리봉동.대림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지역의 경계 내로 제한된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로 제한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분절된 연대감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한 분절된 연대감은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단체 간 경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005년 <재외동포법> 개정된 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조선족 민간단체는 각기 서로 가른 운영취지와 활동내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원 많이 못 받은 조선족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단체 관리자가 개인 돈으로 운영해왔다.⁴¹⁾ 이런 경우에서 어렵게 운영해온 단체를 다른 단체의 산하로 보

41)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동포단체 중에) 100%로 회비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 요. 다 자기돈 쓰는 거

내기 어렵다. 이러한 분절된 연대감으로 인해 집단적 역량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들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재한 조선족의 사회적 위치의 개선은 목표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⁴²⁾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국적과 참정권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서 조선족 민간단체의 활동은 조선족 거주 공동체로 국한된 활동, 분산된 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연대의 분절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2007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조선족은 민간단체를 통한 집단적 조직화와 권리의 요구자인 동시에 동포이자 국적자로서 정책 제안자로서 자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이주노동자운동에서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영역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제5장 결론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리봉·대림 지역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민이 1999년 재외동포법이 실시된 후에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해 차별을 받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정 요구를 분석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들은 초기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결성 하였으나, 재외동포법 시행과 개정 이후에는 동포로 신분을 인정받으면서 한국 사회 내 동화를 강조하고 스스로를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과 구분 하는 경향이 보이게 된다.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조선족 이주민은 이주노동자 신분에 벗어나고 동포로 민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다.

둘째,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은 차별과 무시는 한 국인과 이들의 동화와 융화에 제도, 문화, 의식 등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준다. 현재 조선족 민간단체는 이런 차별과 무시를 개선하려고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 권익 신장, 문화적 차이의 인정 등을 포함하는 활동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조선족 이주민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민간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들이 동화와 배제의 대상이라는 인식보다는 통합과 인정을 요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족 민간단체들이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수용과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고 동화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점차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냄과 조선족이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정을 요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재한 조선족 민간단체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조선족 민간단체들의 주된 사업은 체류 상담, 노동 상담 및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예요. 우리도 김희장님 자기 돈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류경권, 인터뷰 내용, 2015년 10월 6일.

42) 방미화, 『이동과 정착의 경계에서-재한 조선족의 실천전략과 정체성』, 한국학술정보, 2013, 131~133쪽.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제3의 범주'로 조선족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동시에 조선족 민간단체가 취하고 있는 전략들에도 여러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의 문화적 차이와 지역공동체와 교류와 융합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활동은 앞선 제도적 진입 장벽 속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할 수도 있다. 대다수 조선족의 지위를 규정하는 노동시장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둘러싼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문화, 교육, 교류, 입법과 정책 요구 등은 활동은 현재 조선족 공동체내와 개인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바는 제한 조선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국 사회의 동포로서 이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익신장-노동시장 내 제도적인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